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정방안요구권 신설 및 동의의결 결정기간 명시 등〉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496호, 제2215499호,
제2215503호, 제2215504호, 제2215505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II. 검토의견	11
1. 동의의결의 의의와 개정안의 발의배경	11
2. 시정방안 준수 요구	17
3. 동의의결 기한 및 절차 중단 사유 규정 등	26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2. 22.
- 3) 회부일 : 2025. 12.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속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대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단 사유를 규정함(안 제90조).

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2. 22.
- 3) 회부일 : 2025. 1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신설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위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범 계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2. 22.
- 3) 회부일 : 2025. 1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위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2. 22.
- 3) 회부일 : 2025. 1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위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범 계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2. 22.
- 3) 회부일 : 2025. 1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위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동의의결의 의의와 개정안의 발의배경

□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임.

- 동의의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89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7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34조의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 제24조의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4조의9에 각각 규정됨.

□ 동의의결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신청-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보고-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상정-동의의결서 작성-동의의결 통지 및 이행관리’의 절차로 진행됨.

□ 동의를결 제도는 미국의 당사자주의적 분쟁해결시스템(Adversarial Dispute Resolution System)의 하나¹⁾로 2007년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 체결된 한·미 FTA²⁾의 이행법률임.

- 동의를결은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 표시광고법, 2021년 대리점업, 2022년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에 차례로 도입되었고, 2026년 1월에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되었음.

□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 명령(Consent Order),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DOJ)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의 집행제도를 두고 있고,³⁾ EU는 미국의 동의 명령 제도를 모델로 하여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의무부담부확약(Verpflichtungszusagen), 일본은 동의심결, 호주는 확약, 프랑스는 약속이행결정이라는 명칭으로 동의를결 제도를 운용 중임.⁴⁾

1) 송태원, '동의를결제 실무운용례에 대한 법적 검토-관련당사자들의 긴장관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제논단」, 2016. 3., p.83

2) 한·미 FTA('07. 6. 30. 서명) 협정문

제16. 조 : 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Article 16.1 : Competition Law and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5.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their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s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the enforcement action. A Party may provide for such agreements to be subject to judicial approval.

3) 우리나라의 동의를결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에 해당함.

4) 송혜진, 박희주, '동의를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동의를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1, 한국소비자원, 2020. p.18-19

□ 동의의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먼저, 사건처리의 간소화에 따른 효율성임.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사건은 관련시장확정 등 경제분석을 통한 위법성의 입증이 어렵고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아 사건의 확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 법적 분쟁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을 배제할 수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효과적인 법 집행의 확보임.

동의의결을 통해 위법성 확인을 위한 분쟁 절차가 생략되고 경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조치에 마련되므로 경쟁제한 상태가 조속히 종료되어 행정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확보됨.

- 아울러,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임.

과징금, 과태료, 벌칙 등 기존의 처분 등은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어려운 데 반해, 동의의결은 제품가격의 인하나 피해보상 등 소비자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기능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의 의견도 있음.

- 첫째,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정 짓지 아니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을 때 위법성 입증이 어려워 승소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 둘째,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형사소추권의 침해 문제임.

동의의결은 위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는 데 반해, 명백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을 두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과징금 처분 또는 벌칙 등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바 결국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는 동의의결이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임.

- 셋째, 동의의결 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쟁점으로서 사건처리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2026년 3월 20일까지 총 40건의 동의의결이 신청되었는데, 이 중 인용된 26건의

경우 신청일부터 합의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296일에 달하였음.⁵⁾

<동의의결 소요기간(신청-합의일)>

연번	신 청 인	신청일	합의일	소요일수
1	네이버(주)	2013-11-20	2014-03-12	112
2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2013-11-20	2014-03-12	112
3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2013-11-21	2014-03-12	111
4	에스에이피코리아(주)	2013-11-06	2014-10-01	329
5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	2014-08-27	2015-08-19	357
6	에스케이텔레콤(주)	2015-10-20	2016-09-05	321
7	(주)케이티	2015-10-29	2016-09-05	312
8	(주)엘지유플러스	2015-10-28	2016-09-05	313
9	남양유업(주)	2019-07-26	2020-04-29	278
10	애플코리아(유)	2019-06-04	2021-01-27	603
11	(주)스타필드하남	2022-04-08	2022-10-28	203
12	(주)한솔	2022-09-29	2024-05-17	596
13	(주)유진종합건설	2022-10-13	2024-03-15	519
14	(주)지에스리테일	2024-05-10	2025-03-21	315
15	(주)비에프리테일	2024-05-23	2025-03-21	302
16	(주)코리아세븐	2024-05-30	2025-03-21	295
17	(주)이마트24	2024-06-04	2025-03-21	290
18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2024-09-06	2025-05-23	259
19	(주)하이브	2024-09-12	2025-05-23	253
20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2024-09-27	2025-05-23	238
21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2024-09-09	2025-05-23	256
22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	2024-09-02	2025-05-23	263
23	(주)카카오	2024-10-31	2025-06-27	239
24	브로드컴 Inc. 외 3개사	2024-10-31	2025-08-18	291
25	구글 엘엘씨 외 2개사	2025-04-20	2025-11-19	213
26	(주)효성 및 효성중공업(주)	2025-03-18	2026-0-204	323
평균 소요기간(신청-합의일)				29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참고로 기각된 13건의 신청일부터 합의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5일임.

□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⁶⁾을 제기한 바 있고, 개정안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6) 2025년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 시정방안 준수 요구

□ 개정안들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피심인에게 제시하여 이에 따르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제88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제7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제34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제 24 조 의 2	제 25 조 의 6
정방안 준수 요구)	정방안 준수 요구)	정방안 준수 요구)	(시정방안 준수 요구)	(시정방안 준수 요구)
①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	구) ① 공정거래위원회	구) ① 공정거래위원회
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 (이하 이	는 신속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이하	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단체(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오인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제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제	등(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해소방안 을 요구하 지 아니하 고 이 법 에 따른 심의 절차 를 진행하 여야 한다. 1. 제40조 제1항에 따른 위 반행위 인 경우 2. 제129조 제2항에 따른 고 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6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 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2 9조제2항 에 따른 고발요건 에 해당하 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해소방안 을 요구하 지 아니하 고 이 법 에 따른 심의 절차 를 진행하 여야 한다.	해당 행위 가 제44조 제2항에 따 른 고발요 건에 해당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는 해 소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 른 심의 절 차를 진행 하여야 한 다.	33조제2항 에 따른 고발요건 에 해당하 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해소방안 을 요구하 지 아니하 고 이 법 에 따른 심의 절차 를 진행하 여야 한 다.	행위가 제 32조제2항 에 따른 고발요건 에 해당하 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해소방안 을 요구하 지 아니하 고 이 법 에 따른 심의 절차 를 진행하 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④ 공정거래 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u>⑤ 제1항</u> <u>에 따른</u> <u>시정방안</u> <u>의 요구는</u> <u>해당 행위</u> <u>가 이 법</u> <u>에 위반된</u> <u>다고 인정</u> <u>한 것을</u> <u>의미하지</u> <u>아니하며,</u> <u>누구든지</u> <u>피심인이</u> <u>제 1 항 에</u> <u>따른 시정</u> <u>방안을 요</u> <u>구받은 사</u> <u>실을 들어</u> <u>해당 행위</u> <u>가 이 법</u> <u>에 위반된</u> <u>다고 주장</u> <u>할 수 없</u> <u>다.</u>				

□ 개정안들은 일부 기업들이 현행 동의의결 제도를 사건처리의 지연책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9조제2항7)에 따라 피심인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경쟁 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및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함께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도 시정방안은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임.⁸⁾

□ 개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피심인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의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경쟁 제한 및 소비자 피해 상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88조의2제1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같은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방안 조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정안

7) 제89조(동의의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8) 예를 들어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려 하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도 시정방안은 충실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88조의2제5항에서는 피심인이 시정방안을 따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 동의의결 제도와 동일한 요건과 효과 규정인바, 개정안은 현재 사건처리의 지연책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는 동의의결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먼저, 현행 동의의결은 피심인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인데, 개정안들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은 동의의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정방안은 피심인이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사건처리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운용 중인 선진국들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동의명령(consent order)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은 연방행정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6권 Subpart C(Consent Order Procedure) § 2.31에서 조사대상자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⁹⁾ EU의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도 기업이 우선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려면 같은 법 제59조¹¹⁾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사건처리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법 제88조¹²⁾에 따른 시정권고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2.31 Opportunity to submit a proposed consent order.

(a) Where time,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public interest permit, any individual, partnership, or corporation being investigated shall be afforded the opportunity to submit through the operating Bureau or Regional Office having responsibility in the matter a proposal for disposition of the matter in the form of a consent order agreement executed by the party being investigated and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 2.32,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in connection with a proposed complaint submitted by the Commission's staff.

10)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Text with EEA relevance)

(13) Where,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which might lead to an agreement or practice being prohibited, undertakings offer the Commission commitments such as to meet its concerns, the Commission should be able to adopt decisions which make those commitments binding on the undertakings concerned. Commitment decisions should find that there are no longer grounds for action by the Commission without concluding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or still is an infringement. Commitment decision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powers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of the Member States to make such a finding and decide upon the case. Commitment decisions are not appropriate in cases where the Commission intends to impose a fine.

11)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3. 동의의결 기한 및 절차 중단 사유 규정 등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동의의결의 기한을 절차개시일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동의의결의 신청인이 심의 절차 지연 등을 목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산하려는 것임.

□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은 각각 해당 법률 또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공정거래법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u>

현행	공정거래법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를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1.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제6항----- ----- -----. ⑧ -----제7항----- ----- ----- -----

현행	공정거래법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 ⑨ -----제8항----- ----- ----- ----- ----- ----- -----. ⑩ 제9항----- -----제7항----- ----- ----- ----- -----. ----- ----- ----- ----- -----. ⑪ 제9항----- ----- ----- ----- ----- ----- ----- -----. ⑫ ----- -----

현행	공정거래법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1. 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⑪ (생략)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 -----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때</u> 3. ~ 5. (현행과 같음) ⑬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행위인 경우에는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 2.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된 사건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표시광고법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동의의결) (생략)	제7조의3(동의의결)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생략)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채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 -----제102조제5항 및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 ----- -----.

가맹사업법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동의의결) (생략)	제34조의3(동의의결)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생략)	제34조의4(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현행 제34조의3과 같음)
제34조의4(이행강제금) (생략)	제34조의5(이행강제금) (현행 제34조의4와 같음)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③ (생략)	제102조제5항 및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④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제34조의4----- -----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9조를 준용한다. ⑤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 -----. ⑤ 제34조의4----- ----- ----- ----- ----- -----.
--	---

대리점법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동의의결) (생략)	제24조의3(동의의결)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
제24조의3(이행강제금) (생략)	제24조의4(이행강제금) (현행 제24조의3과 같음)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90조제2항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동의의결의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건의 조속한 처리라는 동의의결의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조치임.

- 동의의결이 인용된 사건의 평균 처리일이 29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에서 처리 기간을 180일(연장 시 총 240일)로 정함으로써 그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90조제3항은 신청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심의절차 지연의 목적으로 동의의결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를 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심의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동의의결을 남용하여 그 절차가 중단되거나 현행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¹³⁾의 사유로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과하려는 과징금의 10%의 한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함.

13)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는 현행법 제89조제3항¹⁴⁾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6조¹⁵⁾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사건의 조사와 심의가 중단된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기업이 동의의결을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에 동의의결의 기간을 명시하는 것과 과징금 가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동의의결은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이해관계자의 수와 의견수렴 방식 등에 따라 그 양태가 다양한데, 이러한 고려요소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법률로 일률적인 제한을 두면 그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피심인의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된

14) 제89조(동의의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15)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 제5조에 따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는데,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92조¹⁶⁾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과징금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금전 제재라는 입장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의 절차가 중단되는 요건을 규정한 개정안 제90조제3항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7조¹⁷⁾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임.

- 둘째,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달리 그 활용례가 매우 적다는 학계의 비판¹⁸⁾을 고려하면 개정안처럼 동의의결의 중단 사유나 과징금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 측면에서 합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추가로 동의의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중단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도입 실익에 관한 검토도 필요함.

16)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 제7조(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절차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심사관 또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기타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8) 최난설현,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 -제도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상사법 연구」 제40권 제4호, 2022 및 송혜진, 박희주, 위의 글 참조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도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기업이 동의의결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이들 연구는 오히려 현행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요건으로 인하여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유사한 수준의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제도적 유인이 동의의결을 기업의 ‘시간끌기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지적도 있음.¹⁹⁾

-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90조제3항은 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사유만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중단된 절차의 재개에 관한 요건도 함께 규정하여야 법적 정합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넷째,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02조제5항제1호는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은 원래 부과하려던 과징금의 10%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고시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조사와 심의가 중단되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면 심의절차가 재개된다는 점을

19) 최난설현, 위의 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개정안 제102조제5항제1호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봄.

‘원래 부과하려던 과징금’은 심의절차의 재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임.

참고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6조제2호에서는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재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²⁰⁾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인 2025년 12월 31일에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개정하였음.

- 개정 내용은 3주(소회의 사건) 또는 4주(전원회의 사건)의 의견제출 기한을 두는 일반 사건과 달리, 동의의결 사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한 심사보고서 상정과 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상정 시점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의견제출기한을 각각 2주로 단축하는 것,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관한 심사보고서나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

20) 제16조(심의절차의 재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조사·심의절차가 재개된다.

1. 제11조제1항에 의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
2. 제7조에 의하여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다만 공정거래법 제91조제2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2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소회의나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해당 심사 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됨.

□ 한편,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조항 중 시정방안 요구권을 신설하는 조항 외의 사항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조항을 인용하거나 각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방안 준수 요구권 도입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 하도급법 개정안은 별도의 인용조문 정비가 없는데, 이는 현행 하도급법이 이미 공정거래법 제10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²¹⁾

문 의 처
02)6788-5109

21) 제25조의3(과징금)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